교단 운영 비용 검토를 위한 대의원회(COD) 특별위원회

I. 서론

대의원회는 2025년 2월 회의에서 **교단 운영 비용 절감, 총회 재정 마련, 그리고 시간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 재정위원회, 총회사무국 및 관련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해당 위원회의 대의원회 위원은 Henry Eygenraam, Drew Sweetman (chair), Janet deVries, Andre VanRyk, Tom Byma (reporter), Mike Koetje, Phil Apoll, Rob Toornstra이다.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교단 직원은 Brian Van Doeselaar, Joel Vande Werken, Shirley DeVries, Ashley Medendorp이다. 특별위원회는 2025년 5월 대의원회 회의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대의원회는 이를 2025년 총회 보고서에 참고용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총회 이후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2025년 9월 4일 열린 대의원회 특별 온라인 회의에 제출했다.

DRAFT

II. 배경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배경에는 현재 사역분담금(ministry share) 수입의 감소와 교단의 시간과 재정의 선한 청지기적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 2025년 총회 중간 보고서(2025 총회록, p.474–478)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총회의 전반적 비용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모두를 포함한다. 총회와 관련된 가장 큰 비용은 대면 회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으로, 예를 들어 여행, 숙박, 임대 공간, 식사등이 있으며, 2025년 기준 약 25만 달러(USD)에 달했다. 그러나 총회가 의무화한 행정비용(직원 급여, 프로그램, 여행자 보험 및 현장 방문 같은 '숨은 비용', 총회 대리인들의 활동비, 대의원회 운영, 교단 자료 개발 등)을 합하면 연간 운영 비용은 약 320만 달러(USD)에 이른다.

이 보고서는 주로 총회 자체의 비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특별위원회는 교단 거버넌스 비용이 다른 영역에서도 줄어들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사무총장실은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안건집과

총회록의 인쇄 책자 발행에서 디지털 자료로의 전환, 대의원회 회의 비용 절감 방안 검토, 상임위원회 회의 횟수 축소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이미 5만 달러(USD) 이상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더 나아가, 총회는 총회 진행 규칙(Synodical Procedure Rules)의 검토를 2025년에 지시하였으며(2025 총회록, p.608), 그 결과를 2026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로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비용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교단 경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동시에 개혁주의적 교단 운영 철학과 신학적 원칙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별위원회는 중간 보고서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총회 개최, 노회 수 축소, 총회를 허브 공항이 있는 도시의 외곽에서 개최, 노회에 거버넌스 비용 직접 청구, 이원화된 사역분담금 제도로의 전환, 사무총장실 운영부서 축소 등이 있었다.

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 설문조사와 총회 대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단 전반에서 비용 절감 가능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총회 참석자들과 대의원회 위원들이 모두 비용 절감과 거버넌스 재정 마련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으나, 대의원회 차원에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우리의 거버넌스 비용은 단순히 '간접비용'이 아니라, 교단이 함께 나누는 사역의 일부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상호 책무성과 지원은 개혁주의 신학적 약속의 일부이며, 우리는 교회 질서(벨직 신앙고백서, 제30조)에 따라 카운실을 통해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회(minor assemblies)가 대회(major assemblies)를 통해 상호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로서 이러한 약속을 함께 지키는 데는 불가피하게 재정적 비용이 따르며, 그 재정적 의무를 줄이는 제안은 언제나 관계적·신학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직원들과 협력하여 제안된 여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이는 사무총장실 기능의 일부와, 변화가 비용·교회·직원·의사결정 주체에 미칠 영향을 식별하는 작업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연례 총회를 격년제로 전환할 경우, 여행·숙박·시설 임대·총회 주간의

DRAFT

직원 인건비 절감을 통해 연간 최소 50만 달러(USD)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와 직원에게는 중요 사안 처리까지의 대기 시간 증가, 더 방대한 의제와 심화된 총회 일정이라는 영향이 따르게 된다. 반면, 직원들에게는 총회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총회가 매년 열리지 않으므로 준비해야 할 물리적·행정적 부담은 줄어든다. 다만, 이 변화는 교회헌법 제46-a조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한 총회의 결정을 다음 총회가 교회들의 충분한 검토 이후에 최종 승인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또한 노회 수 축소, 총대 후 감축, 총회법 자문위원 직위 폐지, 회 대리인 동의 요건을 3인에서 2인으로 축소, 노회에 총회와 대의원회 운영 등 거버넌스 비용 직접 청구와 같은 방안들의 잠재적 영향도 검토하였다.

DRAFT

III. 역사적 자료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과거 총회의 결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결정으로는 1996년 총회에서의 1주일 총회로의 전환(1996 총회록, p.239–242), 2015–2017년의 이사회(Board of Trustees)에서 대의원회(Council of Delegates)로의 전환, 그리고 2019년 총회에 보고한 총회 검토 특별위원회(Synod Review Task Force)의 결과(2019 총회록, p.801–817)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해 동안 총회 및 그 중간 위원회(interim committee)의 기능과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노회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노회의 수, 노회당 교회 수, 노회의 지리적 범위가 포함된다. 교회헌법 제39조는 “노회는 인접한 교회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o-Am 노회, Hanmi 노회, Minnkota 노회와 같은 예외도 있다.

규모 면에서, Van Dellen과 Monsma는 『교회헌법 주석(The Church Order Commentary)』에서 1937년 당시 Hackensack 노회는 6개 교회가 있는 반면 가장 큰 Orange City 노회는 31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오늘날에는 Yellowstone에 7개 교회가, Central California 노회에 35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또한 Van Dellen과 Monsma는 1603년 네덜란드 하르데르베이크(Harderwyk) 총회가 노회를 구성하는 최소 교회 수를 10개로 권고했다고 기록한다. 현재 CRC 교단의 노회당 평균 교회 수는 약 20개이다. CRC에는 현재 49개 노회와 787개 조직 교회가 있으며, 노회 수를 40개로 줄이면 교회당 약 20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아직 조직되지 않은 개척 교회 제외).

노회별 교인 수는 매우 다양하며, 교회마다 보고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측정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부 교회는 신앙고백한 정회원(입교교인)만이 아니라 출석자 전체를 보고하기도 한다. CRCNA 연감(Yearbook) 사무국은 교회가 보고한 수치만을 기록할 수 있다. 2025년 연감에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 있다:

- 총 49개 노회, 평균 20개 교회, 평균 2,760명의 신앙고백 회원
- Arizona 노회: 9개 교회, 330명 신앙고백 회원
- Alberta North 노회: 31개 교회, 5,100명 신앙고백 회원
- Rocky Mountain 노회: 36개 교회, 2,137명 신앙고백 회원
- Central Plains 노회: 21개 교회, 3,896명 신앙고백 회원

과거 총회는 사역분담금 기준을 승인해 왔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Year	Total Professing Members (Org. Churches)	Ministry Share Rates per Member (USD)	Ministry Shares Received (USD)	Avg. Received Per Member
2025	135,648	N/A	$10,470,000	$77.18
2015	175,687	$336.12	$17,382,796	$98.94
2011	181,222	$307.53	$17,662,684	$97.46
2005	186,661	$266.09	$24,549,644	$131.52
2000	183,516	$237.46	$20,267,000	$110.44
1996	187,051	$227.53	$23,298,000	$124.55

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1인당 헌금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총회·대의원회·사무총장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거버넌스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5년 5월 대의원회 회의에서 행정총무(Chief

DRAFT

Administrative Officer)가 보고한 도표는 사역분담금과 거버넌스 비용의 최신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사역분담금은 거버넌스 비용뿐 아니라 교회들이 의존하는 다양한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학 교육 재정 지원, 노회 및 개별 교회 지원(안전 교회, 장애 사역, 컨설팅, 필수 훈련 등), 선교 및 미디어 사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고된 도표에 따르면 2033년이 되면 사역분담금만으로는 거버넌스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교회와 노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지원 사역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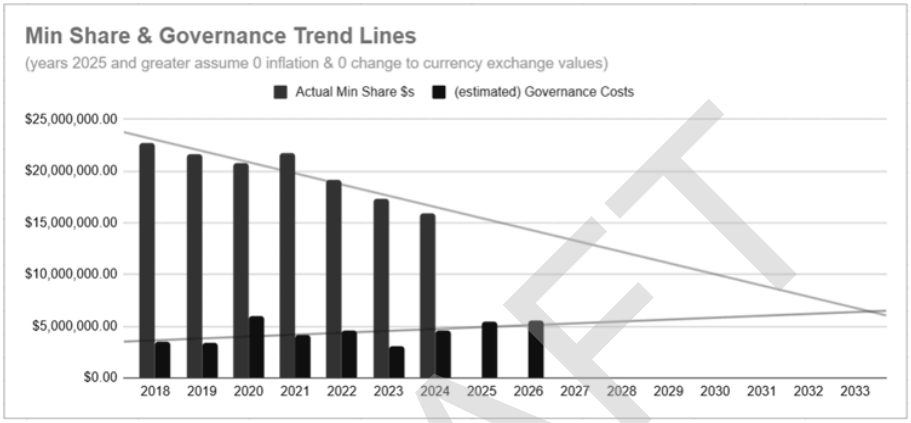

위의 자료와 중간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역분담금의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볼 때, 교단의 거버넌스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과 헌금 증대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하다. 교회의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총회가 반드시 열려야 하지만, 총회 개최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다면 총회 자체가 열릴 수 없다.

DRAFT

IV. 논의된 제안들

2025년 5월 대의원회 회의에서 행정총무가 보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신다.** 교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별위원회는 여러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그중 일부는 재정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온라인 총회 개최**
- **주요 공항 허브 도시에서 총회 개최**

- **노회가 대의원회 및 총대의 여행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 **대의원회를 연간 두 차례 온라인, 한 차례 대면으로 개최하는 방안**

아래는 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주요 제안들이다.

A. **총회를 격년으로 개최**

총회를 격년으로 개최할 경우 여러 기회와 도전 과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격년 총회는 교통·숙박·식사·자료 준비 등 연례 총회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총회로부터 부여된 과제들을 두 해 동안 진행할 수 있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기한이 연장되고, 직원들은 새로운 총회 지시가 나올 때마다 기존 업무를 조정하는 대신, 2년 단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면, 격년 총회의 경우 안건이 더욱 방대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총회에서 매년 처리되는 필수 기능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격년 총회로 전환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안건에는 목사 후보자 인준, 총회 임명직(사무총장, 신학교 교수 등), 이사회 후보 추천, 예산안, 연금 관련 사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를 총회의 중간 위원회(interim committee) 역할을 하는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이다. 대의원회 위원은 각 노회에서 선출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총회를 격년제로 전환한다면, 총회 직전 5월 대의원회 회의의 의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의원회가 총회 안건집에 대한 연례 마감 의무에서 해방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DRAFT

연례 총회 업무	**격년제로 할 경우 가능한 조정 방안**
동의안(Consent agenda items)	대의원회가 5월 회의에서 승인하거나, 격년제로 검토
총회대리인 보고서(Synodical deputy reports)	대의원회가 5월 회의에서 승인하거나, 격년제로 승인
목회자 후보생 인준(Candidates for minister of the Word)	Options: 1. 대의원회가 5월 회의에서 승인 - 후보자의 졸업 시점과 더 가까워져, 더 많은 후보자 참여 가능성 2. 노회가 처리 3. 교단 영입위원회가 인준
교단 이사회 투표 및 임명	Options for appointment: 1. 각 후보자를 2년 임기로 임명하고 최대 2회 연임 가능 (총 6년) 2. 각 후보자를 4년 임기로 하고, 2년 추가 연임 가능 (총 6년) 은퇴 위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위 임명 주기와 유사한 사이클로 진행 가능
IRS 주택수당 승인	미국 사역 이사회에서 승인
상임위원회 보고(Standing committee reports)	교회들에 배포 및 공개 권고안은 총회가 열리는 해에만 처리

DRAFT

재정보고서 검토	미국 사역 이사회와 캐나다 사역 이사회(또는 대의원회 전체)가 5월 회의에서 승인 총회에서는 격년제로 검토
교단 산하기관 보고서	총회마다 두 건 제출
시급한 제안서나 항소	신중한 계획 필요 예외적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처리 가능
총회 승인이 필요한 고위 직원 임명 (예: 사무총장, 신학교 교수)	임시 임명을 더 길게 활용 가능
사역 계획 검토	현재 5년 주기 격년 총회 체제에서는 4년 또는 6년 주기로 조정 필요

CRC에게 있어 격년 총회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총회는 1884년부터 1936년까지 격년으로 열렸으며, 이후 업무량 증가와 회의를 자주 갖는 것이 유익하다는 원칙에 따라 연례 총회로 전환되었다(1936 총회록, p.38–39). 1950년대에도 격년 총회가 다시 논의되었는데, 이는 지역 총회(regional synods) 설치 제안과 함께 검토되었다. 만약 지역 총회가 설치된다면, 연례 총회의 필요성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candidacy examinations)와 같은 사안들도 함께 고려되었다(1960 총회록, p.342, 363). 그러나 1960년 총회가 지역 총회 설치 제안을 부결하면서, 이후 총회 개최 주기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다른 교단들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는 2025년에 총회를 3년마다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북미연합개혁교회(United Reformed Churches in North America)는 현재 격년으로 총회를 연다. 따라서 총회를 매년 열지 않는 방식은 우리 교단에게는 변화이고, 개혁·장로교 전통 내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일이지만 전혀 낯선 제도는 아니다.

DRAFT

B. 노회 차원의 할당금으로 대의원회와 총회 비용 충당

역사적으로 교단은 회원 1인당 사역분담금(쿼터) 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교단의 일부 거버넌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노회 단위 또는 교회 단위 분담금 제도가 더 적절할 수 있다. 현재 대의원회와 총회 회의와 관련된 총 여행·식사·숙박 비용은 약 60만 달러(USD)에 이르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각 노회가 연간 1만 2천 달러를 분담해야 한다. 이 금액은 2년마다 조정된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할당금 제도의 파급 효과도 논의하였다. 특히 어떤 노회가 납부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RCA의 분담금 모델을 검토했는데, RCA의 『총회헌법(Book of Church Order)』(I, 1, 1, a)에 따르면, 노회가 할당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노회의 총대는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CRC에 도입하려면 교회헌법 제4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총회 규정(synodical regulations)을 통해서도 처리 가능하다. 아래는 추가 제안된 조항으로, 밑줄 표시된 부분이 새롭게 삽입된 내용이다:

> 제45조
>
> 총회는 모든 노회의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
> a. 각 노회는 일반적으로 목사 1명, 장로 1명, 집사 1명, 기타 직분자 1명을 총대로 위임한다. 한 노회에서 같은 직분을 가진 총대를 2명 이하로 보낼 수 있다.
>
> b. <u>각 노회는 그 할당금을 완납해야만 해당 노회의 대의원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u>

노회 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거버넌스 비용이 감소할 경우, 노회별 할당금 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할당금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1939년 이전 CRC는 공유 사역 프로그램을 위한 2단계 기여 제도(two-tier system)를 운영했었다.

DRAFT

모든 교회는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했으며, 이 의무에서 면제되려면 반드시 총회와 노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 외의 비용은 교회가 의무를 다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할당금(assessments)”과 그 외 기여의 구분은 인위적이며, 교회가 함께 수행하는 공유 사역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1936총회 안건집, p.19–22; 역사적 요약은 1989 총회록, p.386–389 참조). 이후 교단은 전적으로 자발적 기여에 기반한 사역분담금 제도로 전환했고(2019 총회록, p.789–790), 이는 할당금 모델에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해의 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이러한 변화의 이유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반면, 목회자 연금 기금(Ministers’ Pension Fund) 기여는 여전히 할당금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버넌스 및 사역 관련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자발적 기여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노회와 개 교회들이 교단의 공유 사역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증언할 수 있게 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재정적 비용을 더욱 자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는, 이 방식이 실제로 교단 사역을 위한 추가 재정을 창출하기보다는, 단순히 사역분담금에서 교단 운영 할당금으로 재원을 이동시키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의 많은 교단들은 이미 특정 교단 사역(예: 거버넌스)을 위해 교회당(혹은 노회당) 할당금 제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금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와 지역회가 이를 성실히 납부하는 데 있어 일관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총회가 이러한 할당금을 도입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할당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노회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회계연도에서, 노회별 중간값(median) 헌금액은 약 30만 달러(USD)였다. 그러나 미국 내 아홉 개 노회는 사역분담금으로 10만 달러 미만을 기여하였다. 이 수치는 사역분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우리가 교단 차원에서 수행하는 공유 사역의 상당 부분은 회원 1인당 기준으로 분배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수치는 우리의 거버넌스 제도(즉, 교단이 권한을 노회 단위로 배분하는 구조)가 연간 약 6만~8만 달러(USD)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따라서 10만 달러 미만을 기여하는 노회들은, 사실상 노회와 개별 교회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만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DRAFT

C. 노회별 총회 총대 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

특별위원회는 다른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거버넌스 비용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각 노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대의원 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경우 연간 약 12만 5천 달러(USD)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승인될 경우 노회 할당금 경감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절감액은 총회 관련 비용에만 해당하며, 직원 인건비나 대의원회 운영비 등 전체 거버넌스 비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 방안과 관련해, 인종·성별·직분·연령 등에서 대의원 구성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0년대에 총회가 노회 대표제를 도입했을 때부터 1936년까지는 각 노회가 장로 3명과 집사 3명을 대표로 파송하였다. 그러나 1936년 총회에서 연례 총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총대 수 축소도 함께 채택되었다(1936 총회록, p.39).

그 이후 여러 총회에서 대의원 수 축소(절반으로 축소, 4명에서 3명으로 축소, 회원 수에 따른 비례 대표제 도입 등)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총회는 대체로 총대 수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혁주의 정치 원리상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상회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1936 총회록, p.38), “모사가 많으면 지혜가 있다”(잠언 11:14, 1953 총회록, p.97; 1963 총회록, p.55–56)라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인용했다. 이전 총회 논의들은 주로 **재정적 우려**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들과도 관련이 있었다:

- **지역 총회(regional synods) 설치** (1952 총회 안건집, p.170; 1957 총회 안건집, p.296)
- **집사의 총회 대의원 파송** (1967 총회록, p.91–94, 232–255; 1971 총회 안건집, p.641)
- **노회 규모에 따른 비례 대표제** (1934 총회 안건집, p.319–320; 1987 총회 안건집, p.443–444)

역사적으로는 다양성 문제뿐 아니라, **총회에 부여되는 업무량**과 **총대 수 축소 시 총대**

DRAFT

개인에게 가중되는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노회별 총대 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총회 전체에 적절한 총대 수를 정하고, 각 노회가 그에 따라 적절한 수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회가 가장 효과적인 총대 수를 **150명**으로 정한다면, 현재의 49개 노회는 각각 3명의 총대를 파송하게 된다. 만약 노회가 30개라면, 각 노회는 5명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총회 총대 구성에 대한 어떤 변경이든 **교회헌법 제45조 개정**이 필요하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추가, 취소선은 삭제 부분을 의미):

> 제45조
>
> a. 총회는 모든 노회의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1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노회를 동등하게 대표한다. 각 노회는 원칙적으로 목사 1명, 장로 1명, 집사 1명~~, 기타 직분자 1명~~을 총대로 위임한다. 한 노회에서 같은 직분을 가진 총대를 2명 이하로 보낼 수 있다.

DRAFT

광범위한 논의 끝에, 특별위원회는 총대 수를 줄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노회 수 자체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보다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근 소규모 노회가 늘어나고 교회들의 탈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별 총대 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하며, 노회가 재편될 경우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총대 수 축소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D. 노회 수 축소

노회 재구획(redistricting)과 노회 수 축소 방안은 이미 특별위원회 논의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5년 총회는 사무총장실에, Grand Rapids East 노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응답하여 각 노회와 “협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때 총회는 그랜드

래피즈 지역 교회들의 잠재적 노회 재편성 논의가 인접 노회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전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또한 총회는 이 과정을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조율하도록 OGS에 요청하면서, 사역의 효율과 노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2025 총회록, p.654).

이 제안은 특별위원회 내에서 상당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는데, 핵심 쟁점은 총회가 노회 수 축소 권한을 가지는가, 아니면 노회에서 처리할 사안인가였다. 교회헌법 제39조는 “새로운 노회의 조직과 노회 재구획은 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총회가 직접 노회의 조직·재편성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총회는 교회헌법 제39조 개정과 관련된 여러 제안서를 받은 뒤, 1996년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했다. “다른 노회로의 이관을 요청할 때는 지리적 인접성만이 아니라 더 폭넓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총회는 그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 그러한 근거들을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다”(1996 총회록, p.561). 이 결정은 주로 여성의 교회 직분 참여와 관련한 신학적 성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려졌으나, 총회가 노회 자체를 재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회가 다른 노회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회 수 축소 제안은 CRC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36년 총회는 노회 구획(districting)을 검토할 위원회를 임명했으며, 이 작업은 반드시 “관련 노회와의 충분한 협력과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1936 총회록, p.37–38). 이듬해 총회는 이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소통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결정 사항에 반영하였다(1937 총회 안건집, p.136–150; 1937 총회록, p.236–249; 결정 사항은 1937 총회록, p.64, 104–105에 기록).

노회 재편성과 축소에서 총회의 권한 문제가 논의된 것과 더불어, 특별위원회는 노회의 적정 수에 대한 제안도 검토했다. 제안된 숫자는 12개에서 45개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와 교단의 거버넌스 업무량을 고려할 때, 12개는 지나치게 적고, 45개는 여전히 비용 절감 효과를 내기에 과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예를 들어, 총회의 총대와 대의원회 의원 수가

DRAFT

줄어들면 발생하는 재정적 영향은 단순히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에 필요한 여행·식사·숙박 비용 이상일 수 있다. 노회 수 축소는 또한 직원들의 노회 방문, 노회 회의록 검토, 노회 사안 후속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 각종 이사회 및 위원회 공석과 더불어, 노회 직책(총회 대리인, 지역 자문목사, 교회 카운슬러 등)의 공석을 살펴볼 때, 노회 수를 줄이고 각 노회의 구성원을 늘리는 것은 이러한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인적 자원 풀을 확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각 노회는 매년 총회에 총대 4명을 파송할 수 있다. 2023년에는 교회헌법 제45조가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목사 1인, 장로 1인, 집사 1인,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직분자를 총회에 파송”하도록 하되, 각 노회는 이제 “동일한 직분의 총대를 2명을 초과하여 파송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이 개정의 근거 중 하나는 일부 노회가 총대를 모두 채워 파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다(2023 총회록, p.1031). 이 변경이 모든 노회가 총대 전원을 파송할 수 있는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비교를 위해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2015년 이후 총회에 총대 4명을 모두 파송한 노회의 비율은 69%에서 89% 사이였다. 나머지 노회들은 1명에서 3명의 총대만을 파송하였다.

- 2025 - 69%
- 2024 - 87%
- 2023 - 81%
- 2022 - 80%
- 2019 - 71%
- 2018 - 80%
- 2017 - 77%
- 2016 - 87%
- 2015 - 89%

특별위원회는 노회 수 축소에 있어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그 축소는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반드시 현 노회들과의 협의 속에서

DRAFT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노회 수 축소는 총회 관련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추산에 따르면, 노회가 총회와 대의원회에 총대를 파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1만~1만2천 달러이다. 또한 노회 수 축소는 노회 사역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단 차원의 비용 절감 외에도, 노회 수 축소는 재정 통합과 자원 증대를 가져와 교회 개척, 사역 지도자 개발과 지원, 그리고 노회 직책을 감당할 더 큰 자원봉사자 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노회 수 축소는 여행 비용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형적인 영향으로는 새로운 교회들을 수용하기 위해 노회 문화 자체에 변화와 적응이 요구된다는 점이 있다.

V. 결론적 고찰

본 특별위원회는 앞서 논의된 변화들이 CRC 교단이 의결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중대한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는 사역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거버넌스는 곧 사역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사역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직분자들이 교단의 부르심을 함께 분별하기 위해 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우리는 CRC의 리더십을 맡을 이들에게 어떠한 성품을 요구할지를 정하고, 복음을 함께 살아내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신학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삶과 교리에 있어 서로를 책임 있게 돌보는 과정을 밟는다. 비록 이 과정들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도, 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증언에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 회의에서 시간·재정·은사를 투자하여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 일하심을 믿듯이, 노회와 총회가 모여 사역을 감당하고, 대의원회가 교단 사역의 업무를 심의하며, 총회 대리인과 직원들이 의결기관의 분별 과정을 지원할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구조와 의결기관들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책임과 상호 분별의 수준을 제공한다. 만약 우리의 운영 체제가 회중제(congregational)였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도 쉽게 수량화할 수 없는 관계적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DRAFT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동시에 총회에 현재 상황의 긴급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역분담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단 운영을 이어갈 수 없다. 만약 현재 거버넌스(특히 총회 운영)에 관련된 재정 지출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역 영역의 재원이 점점 더 압박받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교회 개척 재정 모델에서 그 압박의 결과를 보았다(2025 총회록, p.461–465 참조). 교회들이 교단 운영을 위해 기꺼이 재정을 헌신하는 정도가 우리가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오늘의 신실함은 우리가 당면한 재정적 도전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분별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상황은 단순히 도전만이 아니라 기회의 순간임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교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우리는 거버넌스를 인도할 가치들을 숙고하고, 교단 내 다양성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며, 거버넌스 구조와 교단 기관 및 개별 교회의 사역을 균형 있게 조율할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아래 제안들이 균형 잡힌 접근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즉, 총회(공식 회의 소집과 그 결정의 실행: 대의원회, 직원, 총회 대리인 등)를 위한 충분한 자원 배분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교단 사역들이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재정·은사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DRAFT

VI. 권고안

A. 대의원회가 총회에, 2027년부터 총회를 격년(2년마다)으로 개최하고, 현재 매년 총회에서 처리되는 사안들(목사 후보자 과정, 교단 주요 리더십 승인 절차,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대의원회가 마련하여 2027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헌법 제46-a조 개정**이 필요하다(추가 내용은 밑줄, 삭제 내용은 취소선으로 표시).

총회는 ~~매년~~격년으로 모이며, 그 시간과 장소는 그 직전 총회에서 결정한다. 각 총회는 다음 총회를 소집하는 교회를 선정한다.

근거

1. 이 개정은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이 개정은 교회와 노회가 총회 결정을 흡수·처리하고, 부여된 과제를 수행할 추가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3. 총회의 업무는 여전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식은 본 특별위원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며, 이는 대의원회에서 가장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

B. 대의원회가 총회에, 총회와 대의원회 운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회별 연례 분담금 제도를 마련하여 총회 총대의 교통·식사·숙박 비용을 충당하고, 이를 2년마다 검토·조정하도록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헌법 제45조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총회 규정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밑줄은 추가된 내용을 표시한다.

총회는 모든 노회의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a. 각 노회는 일반적으로 목사 1명, 장로 1명, 집사 1명, 기타 직분자 1명을 총대로 위임한다. 한 노회에서 같은 직분을 가진 총대를 2명 이하로 보낼 수 있다.
b. 각 노회는 할당금을 완납해야만 그 노회의 총대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근거

1. 많은 교단 사역들이 “사역분담금 이상”의 헌금을 받지만, 거버넌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그 헌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노회 차원의 할당금 제도는 CRCNA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주인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DRAFT

C. 대의원회가 총회에, 총회가 1년 임기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노회 구조를 검토하고 노회 통합 및/또는 전반적 구조조정에 관한 권고안을 2027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 특별위원회는 노회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하고 최소 9명으로 구성하되 여섯 개 지역 노회에서 각각 1명, 노회 지도자, 총회 경험이 풍부한 인사, 조직 리더십 경험자, 법률 및/또는 재정 전문가, 대의원회 총회 서비스 위원회 위원 1명, 필요 시 교단 직원을 포함하고, 연령·성별·인종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구성되도록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

근거

1. 현 시점에서 우리 교단의 삶 속에서 노회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
2. 노회 수를 줄이면, 총회와 대의원회에 파송되는 총대 수가 감소하여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3. 현재 많은 노회들이 중요 직책을 충원하거나 새로운 사역 기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회 수가 줄어들면 이러한 직책과 사역(예: 교회 개척, 리더십 개발)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 풀이 확대될 것이다.
4. 노회 수가 줄어들면, 노회와의 상호작용에 소요되는 직원 시간도 절약되어 교단의 다른 우선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
5. 총회는 과거에도 노회 재구획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위원회를 활용한 바 있다(1936 총회록, p.37–38; 1937 총회록, p.64, 104–105).

D. 대의원회가 특별위원회에 그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며 해산을 권고한다.

COD Task Force to Review Governance Costs

Drew Sweetman, 위원장

Tom Byma, 보고자

DRAFT

ADDENDUM A

Synod 2024 Costs

	Total Cost (USD)
Space Rental	$22,530.34
Breakfast	$19,932.37
Lunch	$23,630.30
Dinner	$26,217.95
Breaks	$17,021.75
Lodging	$37,343.67
Sound Crew	$13,692.59
Live Stream	$2,150.00
Totals:	$153,518.88

1 Week Salaries*

	Total Cost (USD)
IT salaries (2 weeks)	$49,950
Advancement	$2,471
Banner	$9,150
Thrive	$3,292
HR	$2,483
ReFrame	$4,105
Resonate	$3,659
Additional Admin.	$1,737
Totals:	$76,846

*These are additional costs charged to other ministries not included in the budget for synod. This represents the labor costs for these people to be at synod. It also means they are not working on their ministry programs during this time.

Staff at synod	31
Days	9
Avg. cost per day	$975.34
Total staff costs:	$272,119.86

Average number of delegates and staff	275
Average cost per delegate for event	$558.25

DRAFT

ADDENDUM B

2024 COD Costs

	All Entities		OGS-US		OGS-CAN	
	Year to Date		Year to Date		Year to Date	
	06/30/2024		06/30/2024		06/30/2024	
	YTD Actual	Budget	YTD Actual	Budget	YTD Actual	Budget
Expenditures						
Program Expenses						
Conferences, Conventions, and Meetings						
83100 - Board Meetings	788.45	0	788.45	0	0	0
83200 - Conference/Training	10.78	0	10.78	0	0	0
Total Conferences, Conventions, and Meetings	799.23	0	799.23	0	0	0
Printing and Publications						
84210 - Publications/Printed Materials	20.97	0	20.97	0	0	0
Total Printing and Publications	20.97	0	20.97	0	0	0
Travel Expenses						
83500 - Airfare	27,825.67	114,767.83	18,165.12	99,999.96	9,660.55	14,767.87
83510 - Lodging	32,118.07	0	31,791.90	0	326.17	0
83520 - Ground Transportation	11,734.56	0	6,481.68	0	5,252.88	0
83530 - Mileage	2,118.47	0	1,123.46	0	995.01	0
83540 - Travel/Nontravel Meals	11,642.66	0	11,141.39	0	501.27	0
83550 - Sundry Travel Costs	76.6	0	0	0	76.6	0
Total Travel Expenses	85,516.03	114,767.83	68,703.55	99,999.96	16,812.48	14,767.87
Postage and Delivery						
84200 - Postage/Shipping	694.7	0	457.32	0	237.38	0
Total Postage and Delivery	694.7	0	457.32	0	237.38	0
Insurance						
84170 - Business Insurance	50.7	0	50.7	0	0	0
Total Insurance	50.7	0	50.7	0	0	0
Office Supplies						

DRAFT

84180 - Supplies	1,114.38	0	1,114.38	0	0	0
Total Office Supplies	1,114.38	0	1,114.38	0	0	0
Telecommunication						
81280 - Phone Cost/Allowance	51.02	0	0	0	51.02	0
Total Telecommunication	51.02	0	0	0	51.02	0
Occupancy						
81240 – Rentals	350	0	350	0	0	0
Total Occupancy	350	0	350	0	0	0
Cost Share U.S./Canada						
84990 - CA/U.S. Cost Sharing	-6.43	-180.08	-4,002.52	-11,622.96	3,996.09	11,442.88
Cost Share U.S./Canada	-6.43	-180.08	-4,002.52	-11,622.96	3,996.09	11,442.88
Total Program Expenses	88,590.60	114,587.75	67,493.63	88,377.00	21,096.97	26,210.75
Total Expenditures	88,590.60	114,587.75	67,493.63	88,377.00	21,096.97	26,210.75
Total Revenues over Expenditures	-88,590.60	-114,587.75	-67,493.63	-88,377.00	-21,096.97	-26,210.75

DRAFT

ADDENDUM C

Yearbook 2025 Statistics

Classis	Congregations	Organized Congregations	Emerging Congregations	Multi-site Congregations	Average Sunday Attendance	Total Families	Professing Members Under 18	Total Professing Members	Non-Professing Members	Total Members
Alberta North	30	27	3		4207	2453	58	5118	2991	8109
Alberta South/Saskatchewan	18	17	1		1878	963	14	2322	1047	3369
Arizona	9	5	4		827	126	9	279	51	330
Atlantic Northeast	23	18	5		1662	973	37	1920	428	2348
B.C. North-West	21	16	2	3	3138	1092	69	2418	813	3231
B.C. South-East	23	20	3		3658	1555	31	3504	1200	4704
California South	18	12	6		2663	1287	164	2290	439	2729
Central California	35	27	8		4846	1740	147	4524	1587	6111
Central Plains	21	20	1		2817	1316	82	2855	1041	3896
Chicago South	16	15	1		2231	1240	121	2820	931	3751
Columbia	16	13	3		1191	538	41	1155	358	1513
Eastern Canada	19	19	0		1744	940	44	2079	849	2928
Georgetown	18	17	1		4108	2053	102	4778	1676	6454
Grand Rapids East	21	17	2	2	4466	2175	186	4711	1782	6493
Grand Rapids North	18	17	1		1973	1169	98	2458	644	3102
Grand Rapids South	18	15	3		4173	2210	131	4916	1580	6496
Grandville	17	15	2		3847	2201	86	4598	1658	6256

DRAFT

Greater Los Angeles	32	26	6		5484	2501	416	3279	2025	5304
Hackensack	26	19	7		2071	806	103	1620	360	1980
Hamilton	15	14	1		2467	1395	33	3451	1285	4736
Hanmi	24	12	12		1846	726	125	1122	236	1358
Heartland	22	20	1	1	3539	1432	108	3471	1397	4868
Holland	31	26	5		5301	2732	135	6141	1972	8113
Hudson	25	15	10		1521	678	96	1504	372	1876
Huron	22	21	1		3776	2004	22	4409	2016	6425
Iakota	20	19	1		5208	2132	48	4867	2400	7267
Illiana	18	18	0		3237	2150	129	3841	1366	5207
Kalamazoo	12	11	1		1663	721	89	1809	553	2362
Ko-Am	22	16	6		736	365	60	611	93	704
Lake Erie	16	14	2		1629	690	115	1810	410	2220
Lake Superior	25	22	3		2838	1553	78	3431	1255	4686
Minnkota	17	17	0		2619	1114	80	2693	931	3624
Muskegon	19	16	3		2557	1466	36	3022	768	3790
Niagara	14	11	3		2388	1357	0	2652	1044	3696
North Cascades	10	8	2		1584	619	57	1573	491	2064
Northcentral Iowa	12	11	1		706	404	43	943	231	1174
Northern Illinois	16	14	2		1666	1011	77	2159	811	2970
Northern Michigan	14	12	2		1591	798	51	1969	644	2613
Ontario Southwest	28	25	2	1	4301	1877	32	4628	1789	6417
Pacific Northwest	29	21	8		1829	731	30	1669	413	2082
Quinte	19	18	1		2629	1502	43	3383	1149	4532
Red Mesa	21	18	3		817	469	98	1110	470	1580
Rocky Mountain	36	20	16		2075	741	80	1751	386	2137

DRAFT

Southeast U.S.	21	10	6	5	2591	474	109	2010	461	2471
Thornapple Valley	13	11	1	1	2407	1247	128	2571	742	3313
Toronto	20	19	1		2196	1230	35	2968	575	3543
Wisconsin	16	15	1		2561	1104	160	2620	1035	3655
Yellowstone	7	6	1		872	309	36	826	279	1105
Zeeland	17	16	1		2712	1260	70	2990	1028	4018
Total	980	811	156	13	128846	61629	4142	135648	48062	183710

DRAFT